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2010014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04.0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6.01.20.]



정 보 공 개 서

(주)해두리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해 두 리 푸 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1, 3층 381호
전화 : 1661-921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661-9216
홈페이지: www.haeduri.co.kr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해두리푸드	해두리치킨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1, 3층 38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11.09.01	2011.09.30	박창훈	1661-9216
	법인등록번호	124411-0114679	사업자등록번호	137-86-13650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박창훈 (주)해두리푸드	해두리치킨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1, 3층 38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창훈	1661-921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민규홍 (주)해두리푸드	해두리치킨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1, 3층 38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창훈	1661-921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해두리치킨』	
상 호	『해두리치킨』 _____ 점	
상표(서비스표)	해 두 리	상표 등록번호 제40-02552990-0000호 제41-0255299-00-00호
		상표 등록번호 제40-2024-0138721호
		출원 번호 제40-2024-0082890호 (등록진행중)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449,832	253,856	195,976	1,927,797	57,446	63,846
2023년	315,975	183,844	132,130	1,935,000	6,418	-12,424
2022년	242,809	196,084	46,724	1,873,908	10,197	22,525

☞ 근거자료는 별첨2-2.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박창훈	대표이사	2021년9월 ~ 현재	(주)해두리푸드 대표이사	업무 총괄
민규홍	사내이사	2023년5월 ~ 현재	(주)해두리푸드 사내이사	업무 총괄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1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이사	(주)참바른	가맹사업 경영	2014년 6월~ 2024년 12월	부어치킨(등록번호: 402022006483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서비스표) 해두리	해당상표 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출원일 2011.09.28 등록일 2013.03.28	출원 제41-2011-0030047호 등록 제41-0255299-00-00호	(주)해두리푸드	2033.03.28
		출원일 2024.07.26 등록일 2024.11.21	출원 제40-2024-0138721호 등록 제40-2278971호	(주)해두리푸드	2034.11.21
		출원일 2024.05.07	출원 제40-2024008-28-90호 등록대기중	(주)해두리푸드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두리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11년 12월 23일

2. 『해두리치킨』 연혁

☞ 『해두리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지와이푸드	해두리치킨	기건중	2011년12월~2016년07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40-2
(주)지와이푸드	해두리치킨	기건중	2016년07월~2021년08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4, 정우빌딩3층
(주)지와이푸드	해두리치킨	박창훈	2021년09월~2023년03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1102호(문정동, 문정헤리움써밋타워)
(주)지와이푸드	해두리치킨	박창훈	2023년04월~2024년0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 569길 39-3, 3층(세곡동, 예비뉴빌딩)
(주)해두리푸드	해두리치킨	박창훈	2024년05월~현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51, 3층 381호

3. 『해두리치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해두리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구분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7	27	-	23	23	-	25	24	1
서울	3	3	-	-	-	-	-	-	-
부산	-	-	-	-	-	-	1	1	-
대구	1	1	-	2	2	-	2	2	-
인천	1	1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3	13	-	14	14	-	15	14	1
강원	5	5	-	3	3	-	2	2	-
충북	1	1	-	-	-	-	1	1	-
충남	1	1	-	1	1	-	2	2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	-	-
경남	-	-	-	1	1	-	1	1	-
제주	1	1	-	1	1	-	1	1	-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4	23	11	1	6	5	27
2023	24	5	1	5	2	23
2022	18	14	2	7	2	24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해두리 치킨] 이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액 제외)과 그 산정기준

☞ [해두리치킨] 가맹점사업자가 2024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3.3㎡당		3.3㎡당		3.3㎡당	
전체	27	259,218	11,792	615,859	39,083	98,590	4,118	24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13	321,845	19,835	615,859	39,083	131,594	5,713	11곳 산정

강원	5	172,520	8,274	247,277	18,977	112,830	3,723	
충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 ☞ 상기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2024년 신규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 이 안되는 곳은 일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후 1년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X 3.5
- ☞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 사업자가 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 물품 공급액이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가맹점당 실 매출액은 약 350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 ☞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7개가 아닌 실제 24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해두리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두리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7	781일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 당사는 [해두리치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1]곳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강원도 일부	강원지사	강릉시 강릉대로 187번길 14(초당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 수

	최규모	 (비공개)	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5.12~현재	○	X	X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당사에서 [2024년]에 [해두리치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	 (비공개)	-	-
판촉	-	 (비공개)	-	 (비공개)	-	-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강남세곡지점	서울 강남구 자곡로 180	02-3411-9730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을 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농협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관을 정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두리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인테리어 및 간판, 주방 설비 비용, 기타 점주 선택 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5,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 계약해지	영업 개시 이후
교육비	1,100	계약 체결일	교육 전	교육 후
- 반환 금액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 (교육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 반환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계약 체결일	- 계약 종료 후 조치 미이행 (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교육비	1,1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1,000
합계	7,600

4)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36,770~41,170	3,670~4,117			
인테리어	점주자율	14,000	1,400			
오븐기 외 주방장비	점주자율	17,600(오븐 6단 선택 시) ~22,000(오븐 10단 선택 시)	1,760	개점 전 자체 구입	설치 전 계약취소	기기모델 필히 준수 (가스/전기 중 선택)
오픈홍보비	점주자율	1,870	해당 없음	개점 전 자체 구입	오픈 전 계약취소	본사 제공 디자인 준수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3,300	해당 없음	물품수령 후 그 익주 월요일과 목요일	상품 미공급시	

※ 당사는 원부재료 공급품목 외 시설, 장비, 기타 구입 내역 및 업체선정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가맹사업의 독창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당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어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하는 품질기준의 제품과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검토 후 본사와 협의 및 승인받아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따른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국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7)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지속적 가맹금(로열티)	가맹본부	165,000/월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정액 사용료로 환불 불가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위 내역은 추정 비용으로 실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4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사항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등에 관한 감독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일 전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속적 가맹금(로열티)은 정액 사용료로서 계약 해지·해제 또는 계약 종료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서 제22조 제7항 참고)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는 『해두리치킨』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예정일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는 양도 양수시 발생하는 업무 비용(행정비용 및 개점지원 등)의 대가로 당사에 금 일백일십만원(W1,100,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하

여야 합니다. 양수인의 범위는 상속을 제외한 직계 존 비속간의 승계도 포함됩니다.

☞ **승인을 얻은 영업양수인은 당사와 잔여 계약기간으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이 잔여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당사가 영업양수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기한 내에 당사가 정한 종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료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①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해두리치킨』 시스템 및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해두리치킨』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해두리치킨』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귀하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귀하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 기간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300원씩 즉, [점포면적(m²)X지체일수X3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귀하는 『해두리치킨』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와 문서를 당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해두리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는 [해두리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격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1차서면 시정조치 2차 : 2차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의 중단 4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용역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용역을 경쟁업체 또는 상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상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판매 상품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 방법
오븐구이 치킨	해두리치킨 한마리	17,000	공문서, SMS, 유선
오븐구이 치킨	해두리치킨 두마리	29,000	
오븐구이 치킨	햇,양념치킨 한마리	18,000	
오븐구이 치킨	햇,양념치킨 두마리	31,000	
오븐구이 치킨	갈비킹,화산치킨 한마리	19,000	
오븐구이 치킨	갈비킹,화산치킨 두마리	33,000	
오븐구이 치킨	쌀/고추베이크치킨 한마리	19,000	
오븐구이 치킨	쌀/고추베이크치킨 두마리	33,000	
후라이드 치킨	케이준치킨 한마리	18,000	
후라이드 치킨	케이준치킨 두마리	31,000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양념,반반치킨 한마리	20,000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양념,반반치킨 두마리	35,000	
후라이드 치킨	켄터키치킨 한마리	19,000	
후라이드 치킨	켄터키치킨 두마리	33,000	
후라이드 치킨	마늘간장,치즈닝,할라마요 한마리	20,000	
후라이드 치킨	마늘간장,치즈닝,할라마요 두마리	35,000	
후라이드 치킨	911불닭치킨 한마리	21,000	
후라이드 치킨	911불닭치킨 두마리	37,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후라이드 한마리	17,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후라이드 두마리	29,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파닭 한마리	18,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파닭 두마리	31,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양념,마늘간장 치킨 한마리	19,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양념,마늘간장 치킨 두마리	33,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마요니언,치즈닝 한마리	19,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마요니언,치즈닝 두마리	33,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911불닭,타코야끼치킨 한마리	20,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911불닭,타코야끼치킨 두마리	35,000	
순살 오븐구이 치킨	순살 해두리치킨	19,000	
순살 오븐구이 치킨	순살 화산,갈비킹치킨	21,000	
순살 후라이드 치킨	순살 할라마요치킨	23,000	
오븐구이 치킨	오븐 통날개	19,000	
오븐구이 치킨	화산 통날개	21,000	
오븐구이 치킨	갈비 통날개	21,000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윙	20,000	
후라이드 치킨	마늘간장 윙	22,000	
후라이드 치킨	순살 판타스틱세트	29,000	

오븐구이 치킨	편치킹(로스트)	19,000	
후라이드 치킨	편치킹(후라이드)	20,000	
후라이드 치킨	편치킹(하이브리드)	22,000	
안주	후라이드뽕집	15,000	
안주	통새우튀김&감자튀김	14,000	
안주	오다리튀김&감자튀김	14,000	
안주	페스츄리 페퍼로니 피자	17,900	
안주	페스츄리 불고기 피자	17,900	
안주	페스츄리 포테이토 피자	18,900	
안주	해물오뎅탕	17,000	
안주	해물짬뽕탕	17,000	
안주	게뺨간어묵	14,000	
안주	먹태	14,000	
안주	닭발	17,000	
안주	훈제삼겹 오리지널	19,000	
안주	훈제삼겹 화산	20,000	
안주	훈제삼겹 갈비	20,000	
안주 세트	해두리+골뱅이 세트	30,000	
안주 세트	해두리+닭발 세트	30,000	
안주 세트	해두리+훈제삼겹오리지널	33,000	
안주 세트	해두리+훈제삼겹화산	34,000	
안주 세트	해두리+훈제삼겹갈비	35,000	
사이드	케이준양념감자	6,000	
사이드	치즈닝감자튀김	6,500	
사이드	버터갈릭감자튀김	7,000	
사이드	타코야끼	4,500	
사이드	통새우튀김	4,500	
사이드	새우너겟	7,000	
사이드	치즈볼	4,500	
사이드	소떡소떡	3,500	
사이드	콘크런치오징어	4,000	
사이드	떡볶이	6,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 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을 판매하는 업종	해두리치킨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행정구역 읍/면/동 단위 기준으로 구분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해두리치킨]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각각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영업활동과 홍보판촉행위는 가맹계약서 별첨3에 표시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 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 2024년 온라인 판매 매출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전용상품비중	온라인전용상품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해두리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 이행 사항
1. 당사의 가맹본부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디자인이나 영업 표지, 인테리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갱신시 변경된 디자인이나 영업표지, 인테리어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당사로부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나 교체를 통지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당사에 대한 상품대금, 대여금 및 기타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갱신 시 귀하와 당사는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입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귀하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되, 산정기준은 <직전 3개월간 당사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X10%X잔여기간(월)>부가세 별도>입니다. 각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귀하가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와의 합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본부의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일반해지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해지 사유
1. 가격표·메뉴판·원산지표시 등 "가맹본부"의 운영규칙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표시나 게시, 부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대금지급의무 (‘물품 등’의 대금, 로열티, 광고비 등)을 위반할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제 9조 [교육 및 훈련]에서 정한 교육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나. 제 11조 [시정조치 등] 제 2항에 의하여 "지역담당자"의 교육입소명령을 받고도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못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Q.S.C.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아래 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제 8 조에서 정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나.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입 또는 다른 가맹점으로부터의 위장매입 등 정상적인 구입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다.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공급받은 물품 등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 판매, 대여 받은 경우 라.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이 없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품을 타인에게 제공, 판매, 대여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 판매, 대여 받은 경우 마. "가맹본부"가 정한 복장 및 개인위생사항 (면도 불량, 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바.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운영규칙 등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자 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 등) 발생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6.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광고물 제작시 "가맹본부"의 BI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향상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홍보포스터 등 부착물을 규정된 장소 및 시기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7. 가맹점포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POS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인테리어, 배달박스 등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가맹본부"의 브랜드가치와 영업의 통일성에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기타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가맹본부"의 업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9.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의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등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명칭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안내(광고, 전화 등 포함)하여 "가맹본부" 또는 인근 가맹점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기타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위반, 본 계약상 의무 및 사전 합의사항, 기타 "가맹본부"가 사전에 POS 등과 같은 시스템 또는 "지역담당자"를 통하여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사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상품공급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일반해지 사유

일반 해지 사유
1. 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2. 귀사가 기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1. 귀하에게 파산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6.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렛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동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양도인이 양도 양수시 발생하는 수수료 당사 입금 → 영업양수인과 가맹본부의 잔여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신규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부동산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대리운영은 직계존비속 및 가족의 범위에 한하여 당사의 승인 후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 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직계존비속 및 가족의 범위에 한함)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1)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허락 없이 동일 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닭을 이용한 치킨 배달점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해두리치킨』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 ~ 24:00(권장)	월26일 이상 (권장)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 (가맹본부 승인후)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점주포함 3인 이상	직접근무 (단, 직계존비속 및 가족 대리운영 가능)	33m ² (10평) 기준

6) 가맹본부의 영업장을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필요 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매뉴얼과 세부운영규칙의 준수상태, 위생상태, 각종 설비 관리상태, 원·부자재 관리상태, 서비스 실태, 기타 점포의 원활한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귀하의 점포경영 및 운영상태 전반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내역점검 → 상담일지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제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총광고비의 50%	50% (전체 또는 지역 가맹점에 안분)	광고기획→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2 주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점 모집광고	100%		
	개별광고		100%	
판촉 전체 행사	개별 행사	판촉 총금액의 0%	판촉 총금액의 100% 중 귀하 부담분	판촉기획→가맹점사업자 부담분 산정→2 주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 광고 또는 판촉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 집행 방법, 비용 산정 기준 및 분담금은 사전 고지하며, 가맹점의 서면 동의 또는 약정 체결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귀하는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의 전 . 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귀하는 항상 매뉴얼 및 점포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매뉴얼이나 기타 교육 및 세미나자료, 영업 관련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핵심 원재료(계육, 소스, 파우더, 각무 등) 사입 적발시 전월 매입액의 5%
- 2) 원산지표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언론 보도시 해당 전월 매입액의 5%
- 3) 포스 허위 입력의 경우 전월 매입액의 5%
- 4)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3개월간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X 10% X 잔여기간(월)]
- 5) 전항의 점포 과거 영업실적 기준인 직전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영한 月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월평균 매입액으로 산정한다.
- 6) 위 2항의 정상적으로 운영한 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에 15일 이상 "가맹본부"로부터 상품 또는 자재를 주문한 月을 말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3㎡(10평) 기준 / 당사 시공시	약 [43]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3(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2(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9~41(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8(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D-27(1일)	
교육실시	- 교육실시	D-24~26(3일)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 오픈홍보물 입고 및 오픈준비 체크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예치가맹금 수령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업일정 순서는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오픈지원	가맹점 오픈시 필요한 자금지원	최초 계약기간 준수 조건 및 우수상권 등 회사 조건에 상응시 지원	오픈시	지역/매장/상권에 따라 변동	
업종전환 지원	타브랜드에서 당사브랜드로 전환시 다양한 지원	최초 계약기간 준수 조건 및 우수상권 등 회사 조건에 상응시 지원	오픈시	지역/매장/상권에 따라 변동	
가맹비	가맹비 면제	회사가 정한 기한 및 가맹금 면제 행사 기준	초기 오픈시	가맹비 면제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해두리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업시 교육	1일차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소양과 서비스 마인드 교육 및 실습	이론 및 실습교육	최소 개업 일주일 전	필수
	2일차	실제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배양을 위한 이론 교육 및 실습			
	3일차	현장 실습			
특별교육	신메뉴 출시 및 조리메뉴얼 변경 등 당사가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 및 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해두리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개업 시 교육	매장교육 3일 (24시간)	1,100	가맹점사업자 포함 2인
특별 교육	추후 공지	필요시 실비 청구	추후 공지

※ 교육일정 및 비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계존비속 및 가족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 사유, 상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오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주소)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1661-921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_1. 재무현황 전체(2022~2024)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